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장 학생 생활 - 제9조 (복장용의)		제2장 학생 생활 - 제9조 (복장용의)		
②-마	개인사정에 의해 등하교 시 체육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교육부의 허락 하에 착용을 허용한다.	②-마	<u>교복의 범위는 동복, 춘추복, 하복, 생활복, 체육복 등 학교 로고가 있는 옷으로 한다.</u>	
②-차	삭제 <2021. 2. 7.>	②-차	<u>학생 개인은 교복의 착용 시기를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, 셔츠와 블라우스, 치마와 바지의 선택권을 갖는다.</u>	
②-카	두발은 학생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단정하게 하되, 두발의 길이를 자율화한다. 단, 두발 변형을 위한 모든 헤어제품의 사용 및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. 단,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나 신체 특이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2021. 2. 7.>	②-카	<u>학생 머리의 길이, 모양, 색상 등을 자율화한다. (단,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빨강, 파랑, 노랑, 초록 등 지나치게 밝거나 튀는 원색 염색은 제한할 수 있다.)</u>	
②-타	선크림과 색 있는 립밤을 제외한 화장품 및 실반지, 목걸이, 부착형 귀걸이를 제외한 장신구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. 단, 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전교육부장의 허가를 얻어 착용할 수 있다. <2021. 2. 7.>	②-타	<u>화장, 렌즈, 악세사리 착용 등을 자율화한다. (단,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스모키, 가부키 등 과한 색조 화장은 제한할 수 있다.)</u>	
제2장 학생 생활 제21조 (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)		제2장 학생 생활 제21조 (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)		
8.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		8.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, 오토바이, <u>개인형 이동장치 (전동 킥보드 등)</u>		

<p>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8조 (징계의 종류와 기간)</p>	<p>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8조 (징계의 종류와 기간)</p>
<p>4. 출석정지 :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</p>	<p>4. 출석정지 :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, <u>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.</u></p>
<p>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9조 (징계의 방법)</p>	<p>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39조 (징계의 방법)</p>
<p>2. 사회봉사 :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,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<u>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.</u></p>	<p>2. 사회봉사 :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.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,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<u>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,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가중 처벌한다.</u></p>
<p>3. 특별교육 이수 :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·지정·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·치료를 받아야 한다.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<u>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.</u></p>	<p>3. 특별교육 이수 :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·지정·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·치료를 받아야 한다.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<u>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,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가중 처벌한다.</u></p>
<p>4. 출석정지 : <u>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해 학생을 학교에 출석치 못하게 격리시키는 것으로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·관리가 어려울 경우 도서관학습, 상담실 상담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4. 출석정지 : <u>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 보호자의 요청 시 보호·관리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(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)이나 외부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.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,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.</u></p>

학생자치회 및 선거규정

제2장 학생자치회 제9조 (임원의 자격 요건)	제2장 학생자치회 제9조 (임원의 자격 요건)
학생자치회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.	학생자치회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. 단, 학 급회장(실장), 학급부회장(부실장)과 중복하여 임할 수 없다.